



2009년 일반 급료 설정 결정

FACT SHEET



청소년 고용인과 견습과정이 적용되는 고용인

Australian Fair Pay Commission 은 연방정부 관할권 내에서 최저 임금을 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급료 설정 결정은 오직 이 관할권 내의 고용주와 고용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2009년 일반 급료 설정 결정

위원회는 2009년 6월 12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방정부 표준 최저 임금 (FMW)을 시급¹ 14.31 불, 즉 주당 543.78 불로 유지; 그리고
- 호주 급료 및 분류 등급 (급료 등급) 의 성인² 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

최저 임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급료 등급의 청소년 고용인 급료;
- 견습과정이 적용되는 고용인 (즉, 견습생과 훈련생)의 최저 임금; 그리고
- 국립 훈련 급료 견습과 관련 견습 (각 주 훈련 급료 견습을 포함)을 수행 중인 훈련생의 기본 정기 급료; 역시 변동이 없음.

이 결정은 또한 청소년 고용인은 물론 견습과정이 적용되는 고용인, 장애인 고용인, 비 정규직 고용인, 기본 성과급을 받는 고용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난 2008년 일반 급료 설정 결정 이후로, 경제 전망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고용 성장은 둔화되었고, 평균 노동 시간은 줄어 들었으며, 실업률은 8.5%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전의 경기 후퇴에서 보여진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저임금, 저기술 노동자들에게 가장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충분한 노동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줄어 든 반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기회와 노동 시간이 단축될 위험성이 증가하였습니다.

¹ 위원회의 결정은 시간당 급료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² 여기서 성인의 의미는 장애인 고용인, 견습과정에 있는 고용인, 또는 청소년 고용인 분류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기본 정기 급료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인상되어 가구당 가처분 소득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ustralian Government** 가 단행한 세금/양도 시스템 변경과 최근의 재정 장려 패키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에 의해 부양 받는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은 저임금, 저기술 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막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다수의 젊은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최저 임금을 달리 책정하지 않기로 한 이 결정은 고용 후퇴에 따른 영향, 특히 가장 타격을 받기 쉬운 노동자들에게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결정 과정에서, 경기 회복에 동반하여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 기회의 뚜렷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급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air Work** 인포라인 전화 **13 13 94** 번 또는 **www.fairwork.gov.au**에서 **Fair Work** 온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및/또는 언어 장애인의 경우 전국 릴레이 서비스 전화 **133 677**번, 무료 전화 **1800 555 677**번, 또는 인터넷 **www.relayservice.com.a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결정 내용 전체를 열람 또는 이와 관련한 기타 현황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Australian Fair Pay Commission** 웹사이트 **www.fairpay.gov.a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